아날로그 12 모임 회칙

제정 2016. 01. 01.

제 1 장 총칙

제 1 조【명칭】

본 회의 명칭은 아날로그 12 이다.

제 2 조【목적】

① 본 회의 목적은 정기적인 모임으로 <mark>친구들간</mark> 친목을 도모하고, 본인 및 가족의 유대관계와 상호 간의 <mark>친분으로</mark> 우정을 나누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장 회원

제 3조【회원의 종류, 자격】

- ① 정회원은 2008 년 전고 2-12 반 중에 회비를 납부하는 인원으로 한다.
- ② 준회원은 2008 년 전고 2-12 반 전 인원으로 한다.
- ③ 명예회원은 조연 담임 선생님 및 정회원 중 사망자로 한다.

제 4조【회원의 가입】

- ① 정회원은 소정의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. 소정의 가입 절차는 가입일 기준 전체 정회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입 가능하다.(2021.07.26)
- ② 준회원은 2008 년 전주고 2학년 12반 급우로 한다.
- ③ 명예회원은 조연 담임 선생님으로 한다. 단, 정회원의 사망시 명예회원으로 전환한다.
- ④ 준회원의 정회원 승격 시 기존 정회원의 만장일치를 득해야 한다.(2024.06)
- ⑤ 정회원 명부는 별첨 1 로 관리한다.

제 5 조【가입비】

- ① 신규회원의 가입시, 정회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가입비를 완납하여야 모임에 가입할 수 있다.
- ② 가입비의 책정 산식은 가입기준일 전월 결산시 모임 회비 총금액을 정회원 인원 수로 나눈금액의 110%로 한다.
- ③ 가입비의 책정 산식은 가입기준일 전월 결산시 모임 회비 총금액을 정회원 인원 수로 나눈 금액의 110%로 한다.(2025.01.01 개정)

제 6 조【회원의 권리】

- ① 정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- ② 준회원은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 7 조【회원의 의무】

회원은 모임의 회칙, 규정 및 임원진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 8 조【회비】

- ① 회원은 모임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를 회비로 한다.
- 1. 가입비 : 1) 2018년 이후 가입 회원의 경우 3 개월 분의 회비 6 만원 2)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 정회원의 경우 제 5 조 가입비 조항에 따름
- 2. 월회비 : 월 회비 2 만원 (매달 미입금시 벌금 1 만원)
- 3. 특별회비 : 정기모임 또는 비정기모임 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회비 등
- ③ 회비의 산정 방법과 납부 방법은 모임에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한다.
- ④ 회원이 기 납부한 회비는 중도에 탈퇴하거나 제명되더라도 반환하지 않는다.

제 9 조【회원의 강등 및 제명 및 탈퇴】

-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정회원의 2/3이상의 찬성을 얻어 준회원으로 강등한다.
- 1. 회비를 무단으로 3 개월 이상 미납 시
- 2. 파렴치한 행동으로 모임에 현저한 나쁜 영향을 끼쳤을 시
- 3. 회의 친목과 단결의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시
- ②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정회원의 2/3 찬성을 얻어 제명을 할 수 있다.
- ③ 정회원이 탈퇴를 하고자 할 경우, 해당 임기의 회장에 탈퇴를 통보한다.
- ④ 정회원의 사망시 명예회원으로 전환한다.

제 3 장 모임

제 10 조【모임】

- ① 정기모임은 매년 2 월 12 일을 기준으로 적당한 날을 정하여 회장이 추진한다.
- 1-1. 2월 모임 진행 전 회장은 연락처를 엑셀 구글 문서로 업로드하고 작성 기한을 명시한 다.(2024.06)
- 1-2. 정회원들은 기한 내에 2월 모임에 참석 희망 의사를 밝힌 준회원들의 성명과 연락처를 무서에 기입한다.(2024.06)
- 1-3. 회장은 작성 기한 이후 문서 내에 기입된 인원의 연락처에 대해 2월 모임 참석안내 연락을 1회 진행한다.(2024.06)
- ② 분기모임은 2~4 분기 중 각 1회씩 적당한 날을 정하여 회장이 추진한다.
- ③ 비정기모임은 비정기모임 조건을 충족하면 회장이 승인하고 추진한다.
- ④ 비정기모임 기준
- 1. 모임 카카오톡에 비정기모임 참석자 투표(최소 1주전 투표완료, 인원 변동 가능)
- 2. 회장의 사전 승인(목적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)
- 3. 참석자 인증샷

제 4 장 임원

제 11 조【임원】

- ① 모임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 1 인
- 2. 부회장 1 인
- 3. 총무 1 인
- 4. 서기 1 인

제 12 조【임원의 임기】

- ① 회장 등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선임 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3 조【임원선출】

- ① 회장은 전년 부회장이 당연승계 한다.
- ② 부회장은 전년 총무가 당연승계 한다.
- ③ 총무는 매년 12월 정회원의 1/2 이상의 참여로 실시한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.
- ④ 서기는 매년 12월 정회원의 1/2 이상의 참여로 실시한 무기명 투표로 정한다.

제 14 조【임원의 자격제한】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모임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, 임원이 된 이후에 해당하게 된 때 는 그 직을 상실한다.

- 1. 정회원이 아닌 자
- 2.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

제 15 조【직무】

- ① 임원진 공통 역할
- 1. 원할한 모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
- 2. 정회원 경조사 참석
- 3. 정회원-임원진-명예회원 간 소통 창구, 정회원들의 건의사항 청취 후 의견 발제 등

② 회장 직무

- 1. 정기모임 추진 (2 월 정기모임)
- 2. 분기모임 추진 (2~4 분기별)
- 3. 비정기모임 추진 (일정 조건 충족)
- 4. 임원진 이 /취임식 추진
- 5. 기타 모임 추진 (장소 섭외 및 시간 등) 관련 총 책임
- 6. 모임 운영에 관한 직무 등

③ 부회장 직무

- 1. 경조사 총괄 (화환 주문 및 문구 결정, 경조금의 집행, 경사 일정 관리 등)
- 2. 명예회원 (조연 선생님) 관련 연락 총괄 (안부인사/정기모임 참석여부/경조사여부)
- 3. 모임 운영 관련 총 책임

④ 총무 직무

- 1. 월 /분기 /연별 회비 수입 /지출 내역 정산
- 2. 모임 통장 개설 및 관리 (입출금)
- 3. 년 초 모임 예산 수립
- 4. 모임 지출 관련 총 책임

⑤ 서기 직무

- 1. 아날로그 회칙 정리
- 2. 회원 연락처 업데이트 및 관리
- 3. 회의록 작성
- 4. 임원회의 공지사항 작성

제 16 조【임원의 보선】

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임 할 수 있고, 그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<mark>기산할 수 있다</mark>.

제 5 장 정회원 회의

제 17 조【정회원 회의의 구성】

정회원 회의는 회장, 부회장, 총무, 서기로써 이를 구성하고,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. 정회원 회의의 참석자들을 가리켜 정회원로 일괄되게 호칭한다.

제 18 조【정회원 회의 소집】

- ① 정회원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 정회원 1/2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소집한다.
- ② 정회원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 5 일 전에 임원진에게 회의 목적, 의안, 일
- 시,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이나 SNS 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<mark>정회원</mark> 전원
- 이 동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③ 정회원 회의는 SNS 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 19 조【의결사항】

- ① 정회원 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1. 모임의 집행에 관한 사항
- 2. 사업계획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3. 예산,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
- 4. 정기모임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
- 5. 정기모임에서 위임받은 사항
- 6. 모임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, 변경 또는 폐지
- 7.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으로 정한 사항
- 8.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
- ② 정회원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 20 조【의결방법】

- ① 정회원 회의는 정회원 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보통안건와 특별안건을 불문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전자문서 (이메일, 팩스, SNS 등)에 의해 <mark>정회원</mark>의 찬반 의견을 받아 <mark>정회원</mark> 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자문서로 회신한 <mark>정회원을 정회원 회의에</mark> 출석한 정회원으로 본다.
- 1. 정회원 회의를 소집하였으나, 출석한 정회원이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
- 2. 정회원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의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
제 21 조【의결권】

- ① 정회원 회의의 구성원은 정회원 회의에서 각 1 개의 의결권을 가진다.
- ② 정회원 회의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정회원은 정회원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결의에 참가할 수 없다.

제 22 조【통지】

정회원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6 장 재정회계

제 23 조【운영재원】

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비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24 조 (관리)

- ① 회비는 임원진에서 관리하며 필요시 임원과 협의하고 회의 모든 제원은 임원이 공동 책임을 진다.
- ② 회비는 총무 명의로 개설된 은행통장으로 매월 입금한다.

제 25 조【결산】

- ① 회비의 총 책임은 회장, 관리는 총무가 하며 매월 결산을 한다.
- ② 반기 및 연말 결산 실시결과에 대해서 총무는 재정보고서를 SNS 밴드, 카카오톡 등에 게시한다.
- ③ 회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총무는 반드시 재정보고서에 당기 잔액, 전기 잔액, 회비 입출금내역, 이자, 수수료 등을 날짜 등의 순으로 정리한다.

제 26 조【회비의 지출】

- ① 회비의 지출은 회칙을 준수하되 상황에 따라 정회원들의 친목과 우애를 위해 유연한 운영을 워칙으로 한다.
- ② 2020.2.17 일 기준 회의를 통해 결정된 지출내역은 아래와 같다.
- 1. 2 월 모임, 2/4 분기 (4 월 ~6 월) 모임에 대해 최대 100 만원까지 지출이 가능하다.
- 2. 정기 모임 시 참석 인원의 식대를 인당 3 만원으로 산정한다.(2020 05 30, 3안에 의해 폐

저됨.)

- 3. 각 정기모임 지출 관련하여 아래의 항목을 따른다.
- 3-1. 1/4분기 정기모임(2월 정기모임) : 지출한도 100만원
- 3-1-1. 준회원의 2월 회비는 지출 비용의 1/n(n은 정회원을 포함한 참석 총원)으로 산정 (2024.06)
- 3-1-2. 준회원의 2월 회비 미납부시 총무는 정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공지하고 해당 인원을 블랙리스트 처리하며, 블랙리스트 처리 인원은 영구적으로 2월 모임에서 초대될 수 없음 (2024.06)
- 3-2. 2/4분기 정기모임(하계휴가) : 지출한도 100만원
- 3-3. 3/4분기 정기모임 : 지출한도 108만원(18명×3만원×2)
- 3-4. 4/4분기 정기모임 : 지출한도 108만원(18명×3만원×2)
- 3-5. 비정기모임 : 인당 2.5만원(분기당 1회 한정하여 지원)
- 4. 정회원의 첫 결혼시 축의금 20 만원과 화환을 구매하는 비용에 대해 지출 가능하다.
- 5. 각 <mark>정기 및 분기</mark> 모임의 경우 전북 이외 지역에서 참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2 만원을 지 원하다.
- 6. 회원의 첫 아이 출산시, 경조금 20만원을 지원한다.
- 7. 조사 발생시 조의금은 아래의 항목을 따른다.
- 7-1. 본인의 경우 50만원을 지원한다.
- 7-2. 배우자의 경우 30만원을 지원한다.
- 7-3. 부/모의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.
- 7-4. 빙부/빙모의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.
- 7-5. 자녀(출생 후)의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.
- * 조의금 인상 논의는 최초 논의된 2022년 11월 이후 추후 결정할 수 있다.
- ※ 각 조의항목은 1회에 한하며, 자녀는 조사가 발생한 자녀의 숫자대로 지원한다.
- 8. 그 외 모임의 친목을 위해 진행되는 비정기모임에 대해서 소액의 지원이 가능하다.
- 9. 하계 모임 활성화를 위해 회장은 모임 활성화에 수고해주는 인원들(요리, 운전, 행사 등)에 대해 모임의 원활한 운영에 대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수고에 대한 보상 금액을 직권으로 책정할 수 있다. (2024.06)
- 9-1. 보상 금액 책정 후 공지 및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. (2024.06)
- ③ 모임 회비의 지속적 누적으로 인한 회비 누적액의 상승분을 소모하기 위해 회비의 대량 사용을 결정할 수 있으며, 결정 가능한 모임 회비 내 최소 하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.(2024.06)
- ④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지출사항은 임원단에서 결의하여 정회원 1/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원할 수 있다.
- ⑤ 특별회원의 경조사 발생시 정회원과 같은 수준으로 정한다.

제 7 장 회칙개정

제 21 조【회칙개정】

- ① 회칙의 수정, 보완, 삭제 등의 개정은 정회원의 <mark>2/3</mark> 이상 출석과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.
- ② 회칙 개정 시 본 회칙을 수정하여 입력하나, 제 7 장 회칙의 개정에 관련 사항을 누적하여 명시한다.

제 8 장 보칙

제 22 조【규정의 제정】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누락된 사항 있을 경우는 일반 관례에 따라 실시하되,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하고, 사안에 따라 정회원의 2/3 이상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.

부칙

제 1 조【시행일】

- 1. 2019 년 01 월 01 일부터 개정된 회칙을 적용한다.
- 2. 2022 년 1 월 1 일부터 개정된 회칙을 적용한다.

제 2 조【별첨 1 - 정회원 명부】

순번	성명	핸드폰번호	가입일	비고
1	국해다			
2	김인성			
3	김종백			
4	김주성			
5	김형진			
6	류깈워			
7	류민욱 박정웅			
8	박정웅			
9	양윤선			
10	온요한			
11	이연수			
12	이용준			
13	이성엽			
14	이재성			
15	이형호			
16	장진현			
17	정세영			
18	정희문			
19				

※ 가입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만 관리